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2008. 11. 10.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접수일자 : 2008년 10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5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08. 11. 6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송요출)

가. 제안이유

- 질 높은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을 거쳐 전문 공연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달라진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전부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“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”을 “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”으로 변경(제명, 안 제1조)
- 구민회관 내 공연장과 전시실의 명칭을 “영등포아트홀”로 함(안 제2조 제2항)
- 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및 수탁 관련 조항 신설(안 제4조,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)

-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(안 제5조)
- 공연장과 전시실, 부대시설 사용료 관련 변경 및 신설(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권오운)

-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구민의 무대예술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시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영등포구 구민회관이 새롭게 단장함에 따라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사용료가 타구에 비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審査結課：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7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질높은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을 거쳐 전문공연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달라진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전부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’을 ‘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’으로 변경(제명, 안 제1조)
- 나. 구민회관 내 공연장과 전시실의 명칭을 ‘영등포아트홀’로 함.(안 제2조제 2항)
- 다. 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및 수탁 관련 조항 신설(안 제4조, 안 제6조 ~ 안 제9조)
- 라.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둘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5조)
- 마. 공연장과 전시실, 부대시설 사용료 관련 변경 및 신설(안10조 ~ 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문화체육과와 합의되었음.
- 라. 기 타
 - 입법예고(2008. 10. 9 ~ 2008. 10. 28)결과 “의견 없음”
 -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무대예술 공연, 문화예술 행사 등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 및 명칭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(이하 “구민회관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물포길 213번지에 둔다.

② 구민회관 내 설치된 공연장과 전시실의 명칭을 “영등포아트홀”(이하 “아트홀”이라 한다)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문화시설”이라 함은 연주회, 무용,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, 문화강좌, 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2. “시설”이라 함은 아트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.
3. “시설의 사용”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, 영화상영, 공연, 전람, 기타 행위를 말한다.
4. “사용자”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
5. “사용료”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.
6. “관람자”라 함은 유·무료관람 하는 자를, “관람료”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7. “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2장 운영의 위탁 등

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)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직접 관리·운영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확보·배치한다.

②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, 전시, 문화강좌, 학술,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이용기회 부여는 영등포구민을 타 시·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하며,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)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문화예술분야, 관계공무원, 기타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등으로 구성한다.

제6조(수탁자의 선정기준)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1.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기술수준
2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

제7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2.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3.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4.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.
5. 수탁자는 관계법령,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탁의 취소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2.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
3.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제9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,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

제10조(사용허가) ①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
2.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3.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의 관리·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2.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
3.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

제12조(사용료 등)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: 전부 반환
2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: 전부 반환
3.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반환

제13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시설의 사용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, 그 사용료는 「별표」와 같다.

제14조(사용료의 감면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
2.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
제4장 기 타

제15조(관람료 등)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,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무료관람권은 매 해당 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10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이 공연의 주최가 되는 기획공연의 경우 공익성을 근거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6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신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17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.

③ 사용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.

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.

제18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영등포아트홀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

(제13조 관련)

□ 기본 사용료

구 분 시설명	기본 사용기준	기본 사용료	비 고
공 연 장	1회 3시간	50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. - 토·일·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20%를 가산함 -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 - 기본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당 기본사용료의 30%를 가산하고,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. - 공연 연습, 행사 준비시에는 1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5%로 한다.(단, 1시간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없음) - 철수는 22시까지 완료할 경우 별도의 철수 사용료가 없으며 22시 이후는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5%를 가산한다.
전 시 실	1일 (09:00 ~19:00)	30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. - 토·일·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20%를 가산함. - 행사 준비를 위한 전날의 야간(철야 포함) 작업시 기본사용료의 50%로 한다.

□ 부대시설 사용료

구 분 시설명	기본사용기준	기본 사용료	비 고	
공 연 장	조 명	1회	5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회 사용 기준시간은 3시간 -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당 30% 가산함 -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- 피아노 조율비 미포함.
	음향장비	1회	50,000원	
	음향반사판	1회	30,000원	
	피아노	1회	50,000원	
	영사기	1회	50,000원	
	DLP프로젝트	1회	50,000원	
	녹 음	1회	20,000원	
	녹 화	1회	30,000원	
	냉·난방	1회	80,000원	
전 시 실	빔프로젝트	1회	30,000원	
	좌석의자 설치비	개당	200원	

※ 부가세는 별도임.